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6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 한정애·박홍배·송옥주

김주영 · 정성호 · 강훈식

부승찬 · 장철민 · 서영교

김민석 • 박홍근 • 이병진

이수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 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,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 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.

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(안 제3조의2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"연금급여가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"을 "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, 이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국가의 책무) 국가는 이	제3조의2(국가의 책무)
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	<u>연금</u> 급여의 안정적
•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	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
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	<u>여야 하며, 이에</u>
한다.	